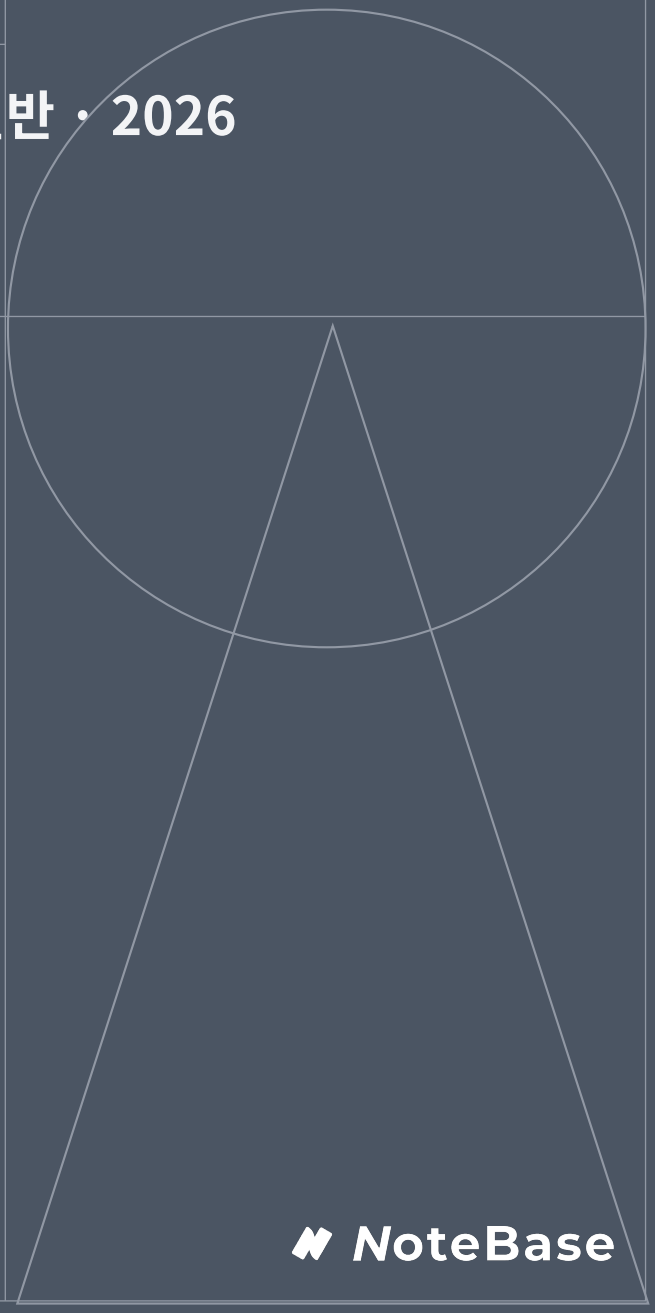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6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6

1. 다음 설명에 맞는 금융시장의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가계부문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흡수한 자금을 투자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에 이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나) 차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가)	(나)	(다)
①	자원 배분	시장 규율	위험 분산
②	위험 분산	시장 규율	자원 배분
③	자원 배분	위험 분산	시장 규율
④	시장 규율	자원 배분	위험 분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금융시장의 세 가지 기능인 자원 배분, 시장 규율, 위험 분산을 각 설명의 핵심 표현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자원 배분: 가계의 여유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 이전하여 생산적인 투자에 쓰이게 하는 기능이다.
키워드는 자금 이전과 생산력 향상이다.
시장 규율: 주식·채권 가격과 같은 시장신호를 통해 시장참가자가 차입자의 건전성을 감시하고 행동을 규율하는 기능이다. 키워드는 시장신호와 감시이다.
위험 분산: 다양한 금융상품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에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기능이다.
키워드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분산투자이다.
따라서 자금의 생산적 이전은 자원 배분, 가격신호를 통한 감시는 시장 규율,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감소는 위험 분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가계의 여유자금을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이전하므로 자원 배분이고, (나)는 시장신호로 차입자를 감시하므로 시장 규율이며, (다)는 분산투자로 투자위험을 줄이므로 위험 분산이다. 세 연결이 모두 옳다.
② X - (나)의 시장 규율만 옳다. (가)의 '위험 분산'과 (다)의 '자원 배분'이 서로 잘못 연결되었다. 올바르게는 (가)는 자원 배분, (나)는 시장 규율, (다)는 위험 분산이다.
③ X - (가)의 자원 배분만 옳다. (나)의 '위험 분산'은 시장신호를 이용한 감시를 설명하므로 시장 규율로 고쳐야 하고, (다)의 '시장 규율'은 분산투자를 설명하므로 위험 분산으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연결은 (가) 자원 배분, (나) 시장 규율, (다) 위험 분산이다.
④ X - (다)의 위험 분산만 옳다. (가)의 '시장 규율'은 자금의 생산적 이전을 설명하므로 자원 배분으로 고쳐야 하고, (나)의 '자원 배분'은 시장신호를 통한 감시를 설명하므로 시장 규율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연결은 (가) 자원 배분, (나) 시장 규율, (다) 위험 분산이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세 기능의 명칭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자금이 여러 투자처로 이동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를 위험 분산으로 보면 안 된다. (가)의 초점은 기업부문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자원 배분이고, 위험 분산은 (다)처럼 투자자가 여러 금융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의 동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자금을 필요한 곳으로 '이전한다'면 자원 배분, 가격 등 시장신호로 '감시한다'면 시장 규율, 여러 상품에 '나누어 투자한다'면 위험 분산이다.

암기 포인트

이전은 자원 배분, 감시는 시장 규율, 나누기는 위험 분산이다.

NoteBase

2. 금융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농업협동조합,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다.

② 새마을금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은행법상 규정된 은행의 고유업무에는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발행, 신탁업,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외국환 등이 있다.

④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며,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안정목표제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회사의 분류, 예금자보호 대상, 은행의 고유업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기관의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은행과 협동조합의 상호금융 부문을 구별하고, 은행업무와 겸영업무를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부보금융회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이나 예탁금을 받아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이다.
겸영업무 = 은행업 자체는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은행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업무이다.

핵심 구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상 정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가 받은 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제도가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상 별도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로 보호된다.
「은행법」상 은행업무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이다. 신탁업은 은행업무가 아니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겸영업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수협은행은 「은행법」상 은행이므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아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 부문이다.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등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포함된다.
- 틀린 표현: 수협은행
- 올바른 표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

② O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 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맡긴 자금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상 별도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로 보호되므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③ X
- 예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및 내국환·외국환은 「은행법」상 은행업무에 해당하지만, 신탁업은 은행업이 아닌 겸영업무이다.
- 틀린 표현: 신탁업을 은행의 고유업무에 포함한 부분
- 올바른 표현: 은행의 고유업무에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이 있으며, 신탁업은 겸영업무이다.

④ X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지만,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안정목표제가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제이다.
- 틀린 표현: 통화량안정목표제
- 올바른 표현: 물가안정목표제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을 혼동하기 쉽다. ③에서는 은행이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라 하여 모두 고유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탁업은 겸영업무이다. ②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제외와 새마을금고의 별도 보호제도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융기관 분류 문제에서는 명칭보다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한다. '○○은행'은 은행인지, 협동조합의 상호금융 부문인지 구별한다. 은행 업무 문제에서는 「은행법」상 은행업무인 수신·여신·환 업무와 겸영업무인 신탁업을 분리한다. 예금자보호 문제에서는 예금보험공사 제도의 적용 여부와 개별 법률에 따른 별도 보호제도를 나누어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수협은행은 은행, 수협 상호금융은 비은행이다. 은행 고유업무는 수신·여신·환이고, 신탁은 겸영이다.
새마을금고 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별도 준비금 제도로 보호된다.

NoteBase

3. 주식투자자 A의 평균 매입단가로 옳은 것은?

> A는 ○○주식을 매월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였다. 첫 달 주가는 2만 원, 둘째 달은 1만 원, 셋째 달은 3만 원일 때 매입하였다.(단, 주식의 매매 단위는 1주이며, 1주 미만의 수량은 매입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 평균 매입단가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① 16,263원　② 16,304원
③ 16,339원　④ 20,000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월 실제로 매입한 주식 수와 매입금액을 합산하여 평균 매입단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매월 투자금액은 500,000원이고, 첫째 달·둘째 달·셋째 달의 주가는 각각 20,000원, 10,000원, 3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3개월간 매입한 주식의 평균 매입단가이다.
주의할 조건: 주식은 1주 단위로만 매입하며, 1주 미만의 수량에 해당하는 잔액은 실제 매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평균 매입단가의 원 단위 미만도 절사한다.

사용할 공식

평균 매입단가=실제 매입금액 합계총 매입주식 수
매입 시점마다 주가와 매입 수량이 다르므로 월별 주가를 단순평균하지 않고, 전체 실제 매입금액을 전체 매입주식 수로 나누어야 한다.

계산 과정

1. 첫째 달에는 500,000원 ÷ 20,000원 = 25주를 매입한다.
2. 둘째 달에는 500,000원 ÷ 10,000원 = 50주를 매입한다.
3. 셋째 달에는 500,000원 ÷ 30,000원 = 16주를 매입하고, 실제 매입금액은 480,000원이며 잔액 20,000원은 제외한다.
4. 총 매입주식 수는 25주 + 50주 + 16주 = 91주이고, 실제 매입금액 합계는 500,000원 + 500,000원 + 480,000원 = 1,480,000원이다.
5. 평균 매입단가는 1,480,000원 ÷ 91주 = 16,263.736…원이므로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면 16,263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를 원 단위 미만 절사하면 16,263원이므로 옳다.
② X: 1,480,000원 ÷ 91주의 결과는 16,304원이 아니다. 틀린 값 '16,304원'은 '16,263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1,480,000원 ÷ 91주의 결과는 16,339원이 아니다. 틀린 값 '16,339원'은 '16,263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20,000원은 첫째 달의 주가일 뿐 3개월 전체의 평균 매입단가가 아니다. 틀린 값 '20,000원'은 '16,263원'으로 고쳐야 한다.
계산 결과가 16,263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오답 포인트

셋째 달 투자금액 500,000원을 모두 매입금액에 넣는 것이 함정이다. 30,000원짜리 주식은 16주만 살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금액은 480,000원이고, 남은 20,000원은 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월별 주가 20,000원, 10,000원, 30,000원을 단순평균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적립식 주식의 평균 매입단가는 월별로 매입 가능한 정수 주식 수를 먼저 구한 뒤, 실제 매입금액 합계 ÷ 총 매입주식 수의 순서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절사 조건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평균 매입단가 = 실제 매입금액 합계 ÷ 총 매입주식 수이며, 매입하지 못한 잔액은 실제 매입금액에서 제외한다.

NoteBase

4. 파생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콜옵션(call option)은 기초자산을 약정된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은 옵션매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옵션의 가격을 의미한다.

③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은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④ 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미래 본인 수입의 불확실성을 확실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선물계약(futures contracts)을 맺게 하는 원동력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파생상품의 기본 용어인 콜옵션, 옵션프리미엄, 선도계약, 선물계약의 의미를 구별하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옵션프리미엄은 옵션매입자가 그 권리를 얻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옵션의 가격에 해당한다. 선도계약은 당사자가 거래 조건을 맞춤형으로 정하는 장외계약이고, 선물계약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하는 계약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약정된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옵션매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옵션프리미엄은 옵션매입자가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옵션의 가격을 뜻한다.
③ O — 선도계약은 거래소 밖에서 당사자끼리 계약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장외거래이므로 거래 장소와 조건이 표준화된 거래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O — 밀 농가는 미래의 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 선물을 매도하면 미래 판매가격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헤지가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옵션프리미엄이 옵션의 가격이라는 뒷부분은 맞지만, 지급 방향을 거꾸로 제시했다. 권리를 사는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파는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옵션에서는 먼저 권리의 방향과 프리미엄의 지급 방향을 확인한다. 콜옵션은 살 권리이고, 프리미엄은 권리를 얻는 매입자에서 권리를 부여하는 매도자에게 이동한다. 선도는 장외 맞춤형 계약, 선물은 거래소의 표준화 계약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콜은 살 권리, 프리미엄은 매입자에서 매도자로, 선도는 장외 맞춤형, 선물은 거래소 표준형이다.

NoteBase

5. 다음 ㈜우정의 재무제표 내용을 참고하여 이자보상배율과 당좌비율을 바르게 산출한 것은?

<재무상태표>

(단위: 만 원)

총자산	1,000	총부채	600
유동자산	400	유동부채	200
재고자산	200	총자본	400

<손익계산서>

(단위: 만 원)

이자비용	100	매출액	400
		영업이익	200
		당기순이익	50

	이자보상배율	당좌비율
①	0.5	2
②	0.5	1
③	2	2
④	2	1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으로 이자보상배율을 구하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하여 당좌비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영업이익 200만 원, 이자비용 100만 원, 유동자산 400만 원, 재고자산 200만 원, 유동부채 200만 원이다.

구해야 할 값: 이자보상배율과 당좌비율이다.

주의할 조건: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전체가 아니라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금액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
이자보상배율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이자비용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므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다.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단기부채를 갚을 능력을 측정하므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다.

계산 과정

1. 이자보상배율은 200 ÷ 100 = 2이다.
2. 당좌자산은 400 − 200 = 200만 원이다.
3. 당좌비율은 200 ÷ 200 = 1이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은 2, 당좌비율은 1이다.

선지 판단

① X — 이자보상배율 0.5와 당좌비율 2가 모두 틀렸다. 0.5는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분자와 분모를 뒤집은 값이고, 2는 재고자산을 빼지 않고 구한 유동비율이다. 올바르게는 '이자보상배율 2, 당좌비율 1'이다.
② X — 이자보상배율 0.5와 당좌비율 1 중 이자보상배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이자보상배율 2, 당좌비율 1'이다. 0.5는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분자와 분모를 뒤집을 때 나오는 값이다.
③ X — 이자보상배율 2는 맞지만 당좌비율 2가 틀렸다. 2는 유동자산 400을 유동부채 200으로 나눈 유동비율이며, 재고자산을 뺀 당좌비율은 1이다. 올바르게는 '이자보상배율 2, 당좌비율 1'이다.
④ O — 이자보상배율 200 ÷ 100 = 2, 당좌비율 (400 − 200) ÷ 200 = 1로 두 값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을 혼동하는 것이다. 유동자산 400을 그대로 분자에 쓰면 2가 되지만, 당좌비율에서는 재고자산 200을 제외해야 하므로 1이 된다. 또한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며, 순서를 뒤집으면 오답값 0.5가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 ÷ 이자비용'으로 계산한다. 당좌비율은 먼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 당좌자산을 구한 뒤 이를 유동부채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선지의 두 값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자비용, 당좌비율은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이다.

NoteBase

6. 우체국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체국예금(이자 포함)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
ㄴ. 우체국예금의 소멸시효는 타 금융기관 예금과 같이 일반법인 민법·상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ㄷ.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관련 업무는 우편환, 외국환, 체크카드, 전자금융 등의 업무가 있으며, 업무제휴를 통한 은행 입·출금서비스, 신탁서비스, 증권계좌 개설 등의 대행 업무가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예금의 국가 지급책임, 지급청구권의 소멸에 적용되는 법규, 우체국이 취급하는 금융 관련 업무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특별법 우선 원칙 = 특정 사항을 별도로 정한 특별법이 있으면 그 사항에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원칙이다.
소멸시효 =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우체국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같은 법 제24조는 우체국예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을 별도로 정하므로 민법·상법의 일반 규정보다 이 특별 규정이 우선한다. 또한 우체국은 신탁 업무에 제한을 받으며, 우편환·대체, 외국환, 체크카드, 펀드 판매, 전자금융 등을 취급하고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결제대금 수납, 은행 입·출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만 옳다. ㄱ은 법 제4조가 우체국예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국가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맞다.
② X — ㄴ이 틀렸다. '민법·상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우체국예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X — ㄷ이 틀렸다. '신탁서비스를 대행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우체국은 신탁 업무에 제한을 받으며, 업무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증권계좌 개설, 결제대금 수납, 은행 입·출금서비스 등을 대행한다.
④ X — ㄴ과 ㄷ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소멸에 관하여 특별법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고, 신탁서비스는 우체국의 제휴 대행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일반 금융기관 예금과 우체국예금을 같은 법체계로 처리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ㄷ에서는 실제 제휴업무인 증권계좌 개설 사이에 '신탁서비스'를 끼워 넣은 표현에 속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특별법 우선과 신탁 업무 제한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체국예금 문제에서는 먼저 국가의 지급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업무범위처럼 별도 법률이 규정한 사항은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업무 나열형 선지는 우체국의 직접 취급업무와 민간 금융기관과의 제휴 대행업무를 나누고, 제한 업무인 신탁이 섞였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멸은 특별법이 우선하며, 신탁은 제한 업무이다.

NoteBase

7. 예금계약이 성립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고객이 입금을 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예입버튼을 눌렀다.
ㄴ. 우체국장이 고객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ㄷ. 고객이 A의 계좌로 현금 송금을 요청하여 금융회사가 입금을 마쳤으나, 실제로는 B의 계좌로 입금할 예금이었음을 주장하였다.
ㄹ. 고객이 타점 발행 자기앞수표 입금을 요청하여, 금융직원은 발행 금융회사의 사고신고 된 사실이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예금원장에 입금 기장을 마쳤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현금 수납, 계좌송금, 자기앞수표 예입에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단순한 입금 준비행위와 금융기관이 금전 또는 이에 갈음하는 지급수단을 받아 예금채무를 부담하는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예금계약의 성립 = 예금자가 금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예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관계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계좌송금 = 송금액이 수취계좌의 예금원장에 기록되면 수취인과 수취 금융기관 사이에 그 금액만큼의 예금관계가 생기는 거래이다.

핵심 구분

ㄱ은 ATM의 예입버튼만 누른 준비 단계이므로 금융기관이 현금이나 증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은 우체국장이 예금 유치 업무로 현금을 받아 확인했으므로 금융기관 측의 수납이 완료되어 성립한다. ㄷ은 고객이 겉으로 표시한 대로 A의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제 속마음이 B의 계좌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A의 계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ㄹ은 금융기관이 타점 발행 자기앞수표의 사고 여부와 결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금원장에 입금 기장까지 마쳐 수표를 예금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성립한다. 판례도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원인관계나 송금인의 착오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는 금융기관에 인도되어 수표상 권리가 이전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ATM 예입버튼을 누른 것에 불과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ㄴ은 우체국장이 현금을 받아 확인했으므로 성립한다.
오답 조합: ㄱ, ㄴ
정답 조합: ㄴ, ㄷ, ㄹ

② X
ㄱ은 입금 준비행위만 있어 성립하지 않고, ㄷ은 A의 계좌에 실제 입금이 완료되어 성립한다.
오답 조합: ㄱ, ㄷ
정답 조합: ㄴ, ㄷ, ㄹ

③ X
ㄴ과 ㄹ은 모두 성립하지만,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ㄷ을 빠뜨린 조합이다.
오답 조합: ㄴ, ㄹ
정답 조합: ㄴ, ㄷ, ㄹ

④ O
ㄴ은 우체국장의 현금 수납, ㄷ은 A 계좌로의 입금 완료, ㄹ은 자기앞수표 확인 후 예금원장 기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세 경우 모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예입버튼을 눌렀다'를 실제 입금 완료로 오해하거나, ㄷ의 주관적인 속마음 때문에 이미 완료된 A 계좌의 예금계약까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다. 또한 ㄹ에서는 자기앞수표가 현금이 아니라는 점보다 금융기관이 결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금원장 기장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금융기관이 현금·증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다음으로 계좌 기장 등 예금채무를 부담하는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를 본다. 송금인의 속마음이나 송금 원인보다 외부에 표시된 송금 지시와 수취계좌의 입금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버튼만 누르면 미성립, 현금 수납·계좌 입금 완료·확인된 자기앞수표 기장은 성립이다.

NoteBase

8. 개인 및 법인과의 예금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단과의 거래는 개인예금으로만 처리되므로, 금융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고지·설명해야 한다.

② 거래의 편의상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각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예금거래도 각자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한국에서 대표자·회사명 등을 등기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한국 내의 예금자와 예금거래를 하면 된다.

④ 대리인과의 예금 중도해지 거래는 정당한 예금주의 위임장과 통장을 제출받고,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예금을 지급한다면 금융회사는 면책되므로 예금주의 의사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개인·단체·법인·외국회사 및 대리인과 예금거래를 할 때 확인해야 할 명의와 대표권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거래 주체별 실명 확인 방법과 대표권·대리권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동대표이사 =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제도이다.
법인이 아닌 단체 = 법인격은 없지만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핵심 구분

금융실명법 시행령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과 그 밖의 법인이 아닌 단체를 구별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명과 등록번호로, 그 밖의 법인이 아닌 단체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실명으로 확인하되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으면 단체명과 해당 번호로 확인한다. 상법상 공동대표는 각자대표와 달리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 또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상호·대표자 등 법정 사항을 등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여 모두 개인예금으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법인이 아닌 단체인지 등에 따라 실명 확인 명의가 달라진다.
틀린 표현: '개인예금으로만 처리된다'
올바른 표현: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예금거래는 단체의 법적·세법상 지위와 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법인명·단체명 또는 대표자의 실명으로 처리한다.

② X
공동대표이사는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각자대표와 다르다. 예금거래도 원칙적으로 공동대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틀린 표현: '각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예금거래도 각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바른 표현: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므로 예금거래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O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는 등 국내 영업 요건을 갖추고 상호·대표자 등 법정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등기사항과 대표권을 확인하여 국내 예금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④ X
대리인이 예금을 중도해지할 때 위임장·통장·인감·비밀번호가 갖추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금융회사가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는 대리권과 예금주의 진정한 중도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확인 의무도 부담한다.
틀린 표현: '면책되므로 예금주의 의사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표현: 금융회사는 대리인의 권한과 예금주의 진정한 중도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거래를 처리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법인격 없음'을 곧바로 '개인예금'과 같다고 보거나, ②의 공동대표를 각자대표로 바꾸어 읽는 것이 함정이다. ④도 서류와 인감·비밀번호의 형식적 일치만으로 모든 확인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한 부분이 잘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체 거래는 먼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고유번호·납세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회사 거래는 공동대표인지 각자대표인지 구별하고, 외국회사는 국내 대표자와 등기 여부를 확인한다. 대리 거래는 서류의 외형뿐 아니라 대리권과 거래 의사의 진정성까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단체는 지위와 번호, 공동대표는 공동 행사, 외국회사는 국내 대표자·등기, 대리 해지는 권한·의사를 확인한다.

NoteBase

9. 예금주 A의 사망에 따른 상속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상속재산: 정기예금
○ A의 가족: 배우자(B), 자녀(C, D), 며느리(J), 손자녀(E, F, G, H)
※ J는 D의 배우자 / E, F는 C의 자녀 / G, H는 D의 자녀

ㄱ. A의 가족이 모두 살아 있는 경우, 상속인은 총 7명이다.
ㄴ. J는 D가 A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ㄷ. A의 사망 후 B가 타인과 재혼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ㄹ. A의 사망 전 C가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C의 자녀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가운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대습상속이 언제 인정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순위와 선순위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습상속 =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이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도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핵심 구분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직계비속 중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므로 자녀 C와 D가 생존하면 손자녀 E, F, G, H보다 먼저 상속인이 되고, A의 배우자 B는 C, D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생존한 경우 상속인은 B, C, D의 3명이다.
자녀가 A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D가 A보다 먼저 사망하면 G, H가 D를 대습하고, D의 배우자 J도 G, H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C가 A의 사망 전에 상속결격자가 되면 C의 자녀 E, F가 모두 C를 대습한다.
상속인 여부는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결정되므로, 당시 배우자였던 B가 그 후 재혼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상속인 지위를 잃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자녀 C, D가 생존하면 손자녀보다 선순위이므로 상속인은 B, C, D의 3명이고, B의 상속인 지위는 A의 사망 시 확정되어 그 후 재혼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상속인은 총 7명이다',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올바른 표현: '상속인은 B, C, D의 총 3명이다', 'A 사망 후 재혼하더라도 B는 상속인이다'.
② X — ㄹ은 옳지만 ㄱ이 옳지 않다. C와 D가 생존한 경우 E, F, G, H는 자녀보다 후순위이고 J도 A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은 B, C, D의 3명이다. 틀린 표현: 'ㄱ, ㄹ' → 올바른 표현: 'ㄴ, ㄹ'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이 옳지 않다. 상속은 A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그 시점에 B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므로, 이후의 재혼은 이미 확정된 상속인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린 표현: 'ㄴ, ㄷ' → 올바른 표현: 'ㄴ, ㄹ'이다.
④ O — ㄴ과 ㄹ은 모두 옳다. D가 A보다 먼저 사망하면 D의 배우자 J는 D의 직계비속 G, H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C가 A 사망 전에 상속결격자가 되면 C의 직계비속 E, F가 모두 C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한다.

오답 포인트

가족관계도에 표시된 사람을 모두 상속인으로 세거나, 손자녀도 자녀와 동시에 상속한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에 참여하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생존한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을 찾는다. 그다음 원래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배우자도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과 함께 상속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생존한 자녀가 손자녀보다 우선하고, 자녀의 선사망·상속결격 때에는 직계비속이 대습하며, 선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함께 상속할 수 있다.

NoteBase

10.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은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소액 분쟁 사건의 소액 요건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분쟁조정·소송 대응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자료열람 요구까지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분쟁조정과 소송의 관계, 소액분쟁사건의 요건, 자료열람요구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록·관리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액분쟁사건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이다.

핵심 구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료열람 수용은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같은 법 제41조는 법원이 분쟁조정 중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42조와 시행령 제36조는 소액분쟁사건의 가액 기준을 2천만원 이하로 정한다.
제46조는 청약철회 대상인 투자성 상품의 철회기간을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법정 예외의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로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청약철회 대상인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류 제공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② O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면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중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③ O
소액분쟁사건의 가액 요건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이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법정 제한·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법적 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자료열람 요구까지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올바른 표현: '금융회사는 법정 제한·거절 사유가 없는 한 권리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를 수용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자료열람을 금융회사의 자율적 협조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권리구제 목적의 자료열람은 법이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이고, 금융회사의 대응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융소비자 보호 문항에서는 기간·금액·재량 여부·의무 여부를 나누어 확인한다. '법원은 중지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금융회사는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라는 구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성 상품 7일, 소액분쟁 2천만원, 법원은 소송중지 가능, 금융회사는 자료열람 의무이다.

NoteBase

11. 다음 정기예금의 질권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질권설정: 예금주가 정기예금을 질권설정하기 위해 우체국에 통지하고, 우체국은 승낙하였다. ○ 피담보채권 변제기: 2026년 6월 10일 ○ 질권이 설정된 정기예금의 변제기: 2026년 9월 25일

① 예금주의 질권설정 통지에 대한 우체국 승낙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다.

② 예금주가 피담보채권 변제 사실의 소명으로 우체국에 질권해지를 통지하면,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체국은 질권자가 피담보채권 변제기의 도래로 인해 발생한 중도해지 권리로 예금지급을 청구하면, 질권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질권이 설정된 정기예금의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동일한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더라도, 원칙상 그 예금에는 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정기예금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성립·해지·실행·재예치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와 질권 목적채권인 정기예금의 변제기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질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담보로 잡은 재산이나 권리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담보권이다.
피담보채권 = 질권으로 담보되는 질권자의 채권이다.
질권 목적채권 = 이 문항에서 질권의 대상이 된 예금주의 정기예금 반환채권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우체국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예금주가 예금을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민법상 지명채권 질권의 대항요건인 설정자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과 연결된다.
질권의 해지는 예금주의 일방적 소명만으로 처리되지 않고 질권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우체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질권의 실행에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와 정기예금의 변제기 도래를 구별한다. 피담보채권이 먼저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질권자에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리금을 현실로 지급받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정기예금으로 갱신하여 종전 예금과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질권의 효력은 재예치된 예금에도 계속 미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우체국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예금주가 예금을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시된 사실처럼 예금주의 통지와 우체국의 승낙으로 질권을 우체국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X
-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었더라도 예금주의 소명과 일방적 해지 통지만으로 우체국이 질권 등록을 해제하고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권의 소멸을 우체국에 대항하려면 질권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우체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 틀린 표현: ‘예금주가 피담보채권 변제 사실의 소명으로 우체국에 질권해지를 통지하면’
- 올바른 표현: ‘질권자가 우체국에 질권의 해지를 통지하면 우체국은 필요한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X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2026년 6월 10일이지만 질권의 목적이 된 정기예금채권의 변제기는 2026년 9월 25일이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자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정기예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뒤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피담보채권 변제기의 도래로 인해 발생한 중도해지 권리’
- 올바른 표현: ‘질권 목적채권인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
- 원금과 이자를 현실로 지급받지 않고 동일한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여 종전 예금과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질권의 효력은 재예치된 예금에도 계속 미친다.
- 틀린 표현: ‘원칙상 그 예금에는 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원칙상 재예치된 예금에도 기존 질권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우체국에 대한 질권해지 통지를 같은 것으로 처리한 함정이다. ③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인 2026년 6월 10일과 정기예금의 변제기인 2026년 9월 25일을 바꾸어 읽게 한다. ④는 형식상 새 예금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원리금의 현실 지급 없이 동일한 예금으로 갱신된 경우의 계속성을 놓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질권의 설정·해지·실행·재예치 중 어느 단계인지 구분한다. 실행 문제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와 질권목적채권의 변제기를 각각 표시한다. 피담보채권이 먼저 만기가 되면 중도해지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고, 예금 자체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확인한다. 재예치는 원리금이 현실 지급되었는지와 종전 예금의 계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질권설정은 통지·승낙, 질권해지는 질권자의 통지, 질권실행은 예금 만기, 동일 재예치는 질권 계속이다.

NoteBase

12. 금융거래 비밀보장 및 정보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단순 통계자료라도 금융거래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ㄴ. 명의자가 금융회사에 정보제공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제공 유예 사유를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ㄷ. 금융회사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정보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일괄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ㄹ.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정보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정보제공 사실의 기록·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범위와 거래정보 제공 시의 통보유예, 요구 방법, 기록·관리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비밀보장의 대상, 통보유예의 요청 주체, 금융회사 상호 간 제공의 예외, 과세자료의 기록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거래정보등 =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다.
통보유예 =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는 시점을 법정 사유가 있는 동안 미루는 것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금융실명법 제4조는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자료를 원칙적으로 비밀보장 대상으로 삼는다. 개인의 거래를 식별할 수 없는 단순 통계자료는 금융거래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보유예는 명의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금융회사등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유예한다.
금융회사등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특정 점포 요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래정보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에 일괄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3은 거래정보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면서도,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ㄷ과 ㄹ이 옳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ㄱ의 '단순 통계자료라도 금융거래에 관련된 내용이면 비밀보장의 대상'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특정인의 거래를 식별할 수 없는 단순 통계자료는 비밀보장 대상이 아니다. ㄴ의 '명의자가 유예를 신청한다'는 표현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통보유예를 요청한다.
② X —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 묶은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ㄷ과 ㄹ이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 묶은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ㄷ과 ㄹ이다.
④ O — ㄷ은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 제공에 해당하여 관리 부서에 일괄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ㄹ은 법정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가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므로 둘 다 옳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금융거래 관련 자료'라는 넓은 표현에 끌려 단순 통계자료까지 모두 비밀보장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ㄴ에서는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와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통보를 받는 사람은 명의인이지만, 유예를 요청하는 주체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밀보장 문항은 먼저 자료가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식별하는지 확인한다. 정보제공 절차 문항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나누어 보고, 기록·관리 의무 문항은 법정 과세자료 제출 예외가 있는지 확인한다. 조합형에서는 ㄱ~ㄹ을 각각 O/X로 확정한 뒤 선택지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단순 통계는 제외, 통보유예는 요구자가 요청, 금융회사 간 업무상 정보는 관리 부서 조회 가능, 법정 과세자료는 기록·관리 예외이다.

NoteBase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통장 재발급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체신관서의 최고(催告) 후 1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한다.

③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로 귀속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은 예금자 청구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고로 귀속된 예금이 예금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認知)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예금 지급청구권의 소멸 요건과 기간, 소멸된 예금의 국고 귀속 및 예외적 지급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일반 예금과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의 소멸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최고(催告)는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이다. 국고 귀속은 지급청구권이 소멸한 예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일반 예금은 10년간 예입 · 지급 등의 거래나 통장 재발급신청 등이 없으면 체신관서가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을 때 지급청구권이 소멸한다. 반면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은 최고 후가 아니라 지급증서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청구권이 소멸한다. 소멸된 예금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지만, 같은 법 제24조의2와 시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예금자가 10년간 예입 ·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통장 등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체신관서는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② X —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의 지급청구권은 체신관서의 최고 후 1년이 아니라 지급증서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때 소멸한다.
틀린 표현: '체신관서의 최고 후 1년간'
올바른 표현: '지급증서 발행 후 3년간'

③ O —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금자의 의식불명,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에 따라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O — 예금자의 사망 때문에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한 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국고에 귀속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일반 예금에 적용되는 '최고' 절차와 지급증서 발행 예금에 적용되는 별도의 3년 기간을 섞어 놓았다. 또한 일반 예금도 최고 후 소멸기간은 1년이 아니라 2개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상이 일반 예금인지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인지 확인한다. 일반 예금은 '10년간 거래 없음 → 최고 → 2개월', 지급증서 발행 예금은 '발행 후 3년'을 적용한다. 그다음 지급청구권이 소멸하면 국고 귀속이 원칙인지, 시행규칙상 예외적 지급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 예금은 10년·최고·2개월, 지급증서는 발행 후 3년, 소멸예금은 국고 귀속이 원칙이다.

NoteBase

14. 다음 금융거래 요청에 따른 고객확인(CDD) 업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명: ㈜우정기업(영리법인) ○ 대표이사: 홍길동 ○ 주주명부: 박대한(47%), 홍길동(23%), 김민국(21%), 이만세(9%) ○ 요청업무: 법인예금통장 신규 개설 ※ 이하 제출 서류 내용은 생략된 것으로 본다.

①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확인(CDD)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법인 및 단체의 신원확인 사항 중 설립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 후 기재해야 한다.

④ ㈜우정기업의 실제소유자는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에 따른 실제소유자 파악 3단계 절차 중 1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적용되는 고객확인(CDD)의 대상, 영리법인의 신원확인 항목, 실제소유자 확인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확인 항목을 구별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의 3단계 순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고객확인(CDD) =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절차이다.
실제소유자 = 법인이나 단체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통제하는 자연인이다.

핵심 구분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고객확인을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업종을 확인하고, 설립목적은 비영리법인 및 그 밖의 단체에서 확인한다. 같은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는 먼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성명·생년월일 및 필요한 경우 국적을 확인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요청 업무가 법인 예금계좌의 신규 개설이므로 거래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② X — ㈜우정기업은 영리법인이므로 신원확인 사항으로 확인할 것은 설립목적이 아니라 업종이다.
틀린 표현: '설립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올바른 표현: '영리법인의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설립목적은 비영리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신원확인 사항이다.

③ O —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뒤 그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25% 이상 지분을 가진 박대한이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이 된다.

④ O — 실제소유자 확인의 1단계는 25% 이상 지분 소유자를 찾는 것이다. 박대한은 47%를 보유하므로 1단계에서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설립 목적'은 모든 법인에 공통되는 항목이 아니다. 영리법인은 '업종', 비영리법인 및 그 밖의 단체는 '설립목적'을 확인한다는 구분을 바꾸어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또한 23%를 가진 대표이사 홍길동보다 대표자가 아닌 47% 주주 박대한이 1단계 실제소유자 확인 기준에 먼저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신규 계좌 개설인지 확인하여 금액 기준 없이 고객확인 대상임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구분하여 '영리법인-업종, 비영리법인-설립목적'을 대응시킨다. 마지막으로 주주명부에서 25% 이상 지분 소유자를 찾아 실제소유자 1단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규 계좌는 금액 무관 CDD, 영리는 업종·비영리는 설립목적, 실제소유자 1단계는 25% 이상이다.

NoteBase

1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통예금'은 가입 대상을 실명의 개인으로 제한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②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은 독립·국가 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

③ '우체국 다드림통장' 실버 패키지는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이다.

④ '우체국 페이든든+통장'은 실명의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통장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가입하는 사업자 통장으로 구분하는 통장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별 가입 대상과 핵심 용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통예금은 가입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자유입출금 예금이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각종 수급금을 보호하는 전용 통장이고, 보훈급여금은 호국보훈지킴이통장으로 구분한다. 다드림통장 실버는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든든+통장은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으로 나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가입 대상을 실명의 개인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이다. 보통예금의 가입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실명의 개인만 가입하는 예금이 아니다.

② X
틀린 표현은 '행복지킴이통장이 독립·국가 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을 보호한다'는 부분이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법령상 압류금지 수급금을 보호하고, 독립·국가 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은 호국보훈지킴이통장으로 보호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65세 이상'이다. 다드림통장 실버의 가입 대상은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해당 고객에게 여러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이다.

④ O
페이든든+통장은 실명의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통장과 개인사업자·법인이 가입하는 사업자 통장으로 구분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의 가입 대상을 혼동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행복지킴이통장과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의 보호 대상을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③의 '65세 이상'은 일반적인 고령자 기준을 떠올리게 하지만 다드림통장 실버의 실제 기준은 만 50세 이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가입 대상'과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자금'을 각각 확인한다. 압류방지 통장은 수급금의 종류를 구분하고, 연령형 상품은 제시된 나이를 정확히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보통예금은 대상 제한 없음, 행복지킴이는 복지 수급금, 호국보훈지킴이는 보훈급여금, 다드림 실버는 만 50세 이상, 페이든든+는 개인·사업자 구분이다.

NoteBase

16.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40+α자유적금'은 월 50만 원 이상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 이체할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은 예금주에게 매월 자동이체 저축 현황을 알려주는 자동이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우체국 다드림적금'은 만기 후 재예치 또는 재가입할 경우, 고객별 1회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④ '우체국 매일모아e적금'은 매일 저축(자동이체) 및 매주 알림 저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적금상품별 우대이율 조건과 부가서비스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2040+α자유적금은 일정 금액 이상 자동이체를 유지하면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목돈을 모으는 데 초점을 두며 자동이체 저축현황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국 다드림적금은 각종 이체와 장기거래 등 주거래 실적이 많을수록 우대혜택이 커지는 상품이다.
우체국 매일모아e적금은 매일 자동이체와 매주 알림저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용 상품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2040+α자유적금'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50만 원 이상을 만기까지 자동이체하면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② O —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은 예금주에게 매월 자동이체 저축현황을 알려주는 자동이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우체국 다드림적금'이다. 만기 후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재예치하거나 만기해지 당일 재가입할 때 고객별 1회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달달하이(high)적금'의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달달하이(high)적금은 만기 후 재예치 또는 만기해지 당일 재가입할 경우 고객별 1회 우대이율을 적용한다'이다.

④ O — '우체국 매일모아e적금'은 매일 자동이체 서비스와 매주 지정 요일의 알림저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실제로 존재하는 재예치·재가입 우대 내용을 제시하되 상품명만 '우체국 다드림적금'으로 바꾼 선지이다. 서비스 내용 자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맞다고 판단하면 상품 간 특징을 혼동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과 대표 기능을 한 쌍으로 확인한다. '월 50만 원 이상 자동이체'는 2040+α자유적금, '매월 자동이체 현황 알림'은 가치모아적금, '주거래 실적 우대'는 다드림적금, '매일 자동이체·매주 알림저축'은 매일모아e적금, '만기 후 재예치·당일 재가입 우대'는 달달하이(high)적금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다드림은 주거래 실적, 달달하이는 재예치·재가입, 가치모아는 저축현황 알림, 매일모아는 매일 자동이체·매주 알림이다.

NoteBase

17. 우체국 거치식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은 가입자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로 확인될 경우,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② 'e-Postbank정기예금'은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거치·적립식 예금 상품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③ '챔피언정기예금'은 회전주기(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변동금리 적용을 통해 고객 맞춤형 목돈 운용이 가능하다.

④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장기 기증(희망등록)자, 골수 기증(희망등록)자에게 '보너스금리'를 적용하는 공익형 정기예금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체국 거치식 예금상품별 가입 대상, 금리 운용 방식, 우대이율 조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e-Postbank정기예금은 인터넷·스마트뱅킹 전용 상품으로, 온라인 상품 신규 가입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은 회전주기를 활용한 자금 운용과 우편 계약고객·금융거래실적 우대를 특징으로 한다.
챔피언정기예금은 가입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상품이며,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사회 소외계층과 사랑 나눔 실천자 등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이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로 확인된 가입자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이 가입할 수 있고, 우편 계약고객 여부와 금융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우대하는 상품은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이다.
② O — e-Postbank정기예금은 가입기간 중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온라인 거치식·적립식 예금상품을 새로 가입하면 정해진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③ X — '챔피언정기예금'이 1개월·3개월·6개월의 회전주기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회전주기형 금리 운용은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의 특징이다. 챔피언정기예금은 고객이 가입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④ X — 장기 기증 희망등록자와 골수 기증 희망등록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보너스금리'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이들은 이웃사랑정기예금의 '사랑금리'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보너스금리'를 '사랑금리'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서로 다른 상품의 핵심 특징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는 소상공인 정기예금, '1개월·3개월·6개월 회전주기'는 파트너든든 정기예금과 연결해야 한다. ④는 우대 대상 자체보다 우대금리의 명칭을 '사랑금리'에서 '보너스금리'로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마다 가입 대상, 운용 방식, 우대 조건, 우대금리 명칭을 따로 대응시킨다. '온라인 신규 가입'은 e-Postbank정기예금, '회전주기'는 파트너든든 정기예금, '기증·헌혈 등 사랑 나눔 실천'은 이웃사랑정기예금의 사랑금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e-Postbank는 온라인 우대, 파트너든든은 회전주기·우편계약 우대, 이웃사랑은 사랑금리이다.

NoteBase

18. 우체국 예금상품의 우대이율 제공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체국 생활든든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ㄴ. 우체국 다드림통장 직장인 패키지: 우체국 급여성 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ㄷ.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 새출발 희망 패키지: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기증자, 다자녀 가정, 부모봉양자,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ㄹ. 우체국 아이LOVE적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가정, 소년소녀 가정, 새터민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다자녀 가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예금상품별 우대이율 제공 조건을 부가서비스 조건 및 다른 패키지의 가입 대상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대이율은 기본이율에 일정 이율을 더해 주는 혜택이다. 캐시백은 거래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별도 부가서비스이므로 우대이율과 구분한다.

ㄱ X: 생활든든통장의 공과금 자동이체는 자동이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조건이지 우대이율 조건이 아니다.

ㄴ O: 다드림통장 직장인 패키지는 우체국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급여이체 실적을 우대이율 조건으로 인정한다.

ㄷ X: 헌혈자·입양자·장기·골수기증자·다자녀 가정·부모봉양자·농어촌 읍·면 단위 거주자는 새출발 희망 패키지가 아니라 새출발 행복 패키지의 대상이다.

ㄹ O: 아이LOVE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가정, 소년소녀 가정, 새터민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다자녀 가정에 나눔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ㄱ은 '공과금 자동이체 시 우대이율 제공'이 아니라 '공과금 자동이체 시 캐시백 제공'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ㄱ과 ㄷ이 모두 틀렸다. ㄱ은 공과금 자동이체에 대한 캐시백 조건이고, ㄷ의 열거 대상은 새출발 희망 패키지가 아니라 새출발 행복 패키지에 해당한다.
③ O: ㄴ과 ㄹ은 모두 옳다. 다드림통장 직장인 패키지는 급여성이체 기준 충족 실적을 인정하고, 아이LOVE적금은 열거된 취약·다자녀 가정 등에 나눔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④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새출발 희망 패키지'를 '새출발 행복 패키지'로 고치면 옳다. 따라서 옳은 것만 묶은 조합은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공과금 자동이체라는 거래 실적만 보고 우대이율이라고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 혜택의 종류는 캐시백이다. ㄷ에서는 희망·행복 패키지의 명칭이 비슷하므로 가입 대상 집단이 서로 바뀐 것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별 조건을 볼 때에는 먼저 '우대이율·캐시백·수수료 면제' 중 어떤 혜택인지 확인하고, 패키지형 상품은 대상 집단과 패키지 이름을 한 쌍으로 대조한다. 각 문장을 판정하면 ㄱ X, ㄴ O, ㄷ X, ㄹ O가 되어 ㄴ·ㄹ 조합을 고르게 된다.

암기 포인트

생활든든 공과금은 캐시백, 다드림 직장인은 급여이체, 새출발 나눔실천자는 행복, 아이LOVE 취약·다자녀 가정은 나눔우대이다.

NoteBase

19.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법인 전용 상품으로 캐시백형, 포인트 적립형, 포인트 미적립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나) 신규 발급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 제휴보험(3종)의 무료 가입 서비스(1년간)를 제공한다.

	(가)	(나)
①	우체국 성공파트너 체크카드	우체국 LUCK-KEY 체크카드
②	우체국 Biz플러스 체크카드	우체국 LUCK-KEY 체크카드
③	우체국 성공파트너 체크카드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④	우체국 Biz플러스 체크카드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성공파트너 체크카드와 LUCK-KEY 체크카드의 대상 및 부가서비스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 성공파트너 체크카드는 법인 전용 상품으로 캐시백형, 포인트 적립형, 포인트 미적립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체국 LUCK-KEY 체크카드는 신규 발급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 제휴보험 3종의 1년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체국 Biz플러스 체크카드는 사업자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별도 상품이고,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는 우체국 포인트 적립을 중심으로 한 상품이므로 제시된 두 특징의 해당 상품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우체국 성공파트너 체크카드, (나)는 우체국 LUCK-KEY 체크카드이므로 두 특징을 모두 바르게 연결했다.
② X — (나)의 LUCK-KEY 연결은 맞지만, (가)의 '우체국 Biz플러스 체크카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우체국 성공파트너 체크카드'이다. 성공파트너 체크카드가 법인 전용이며 캐시백형·포인트 적립형·포인트 미적립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X — (가)의 성공파트너 연결은 맞지만, (나)의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우체국 LUCK-KEY 체크카드'이다. 제휴보험 3종의 1년 무료가입 서비스는 LUCK-KEY의 신규 발급 고객 대상 혜택이다.
④ X — (가)의 '우체국 Biz플러스 체크카드'와 (나)의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 '우체국 성공파트너 체크카드', (나) '우체국 LUCK-KEY 체크카드'이다.

오답 포인트

'성공파트너'와 'Biz플러스'가 모두 사업자·법인 관련 카드라는 점, '다드림'도 부가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라는 점 때문에 상품명을 바꾸어 연결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법인 전용 3유형'과 '제휴보험 3종·1년 무료'라는 고유 문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을 막연한 대상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고 혜택의 고유 키워드와 연결한다. '법인 전용 + 캐시백·포인트 적립·포인트 미적립'은 성공파트너, '신규 발급 동의 + 제휴보험 3종 1년 무료'는 LUCK-KEY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성공파트너는 법인용 3유형, LUCK-KEY는 제휴보험 3종 1년 무료이다.

NoteBase

20. 전자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금융 이용 고객 중 보안등급이 '안전 등급'인 개인의 경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한도는 1회 1억 원, 1일 5억 원이다.

② 우체국 인터넷뱅킹을 해지하면 '우체국뱅킹'은 자동 해지되나, '우체국뱅킹'을 해지하더라도 인터넷뱅킹 이용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③ '우체국뱅킹'에서 이체 등의 금융거래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PASS인증을 통해서 가능하다.

④ 현재 우체국예금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로 '우체국뱅킹'과 '우체국페이'가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전자금융의 이체 한도, 인터넷뱅킹과 우체국뱅킹의 해지 관계, 인증수단별 이용 범위,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 전자금융은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가 달라지고, 인증수단마다 허용되는 기능이 다르다. 특히 PASS인증은 본인확인과 로그인에 이용되는 수단이므로 이체 등의 금융거래 인증수단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안전등급인 개인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자금이체 최고한도는 1회 1억 원, 1일 5억 원이다.
② O — 인터넷뱅킹을 해지하면 연계된 우체국뱅킹도 자동 해지되지만, 우체국뱅킹만 해지하면 인터넷뱅킹 이용 자격은 유지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PASS인증을 통해서 이체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이다. PASS인증은 본인확인과 로그인에 이용되며, 이체 등의 금융거래 인증수단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올바르게는 우체국뱅킹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PASS인증은 로그인 수단으로 구분된다.
④ O — 우체국예금이 제공하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에는 우체국뱅킹과 우체국페이가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로그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이체 등 금융거래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바꾸어 놓았다. '로그인 가능'과 '금융거래 가능'을 같은 의미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자금융 선지는 이체 한도, 서비스의 가입·해지 관계, 로그인 수단, 금융거래 인증수단을 각각 분리해 판단한다. 인증수단이 제시되면 먼저 로그인용인지 거래용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안전등급은 1회 1억 원·1일 5억 원이고, PASS인증은 본인확인·로그인용이다.

NoteBase